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국가 AI전환을 견인할 석·박사급 AX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제도의 활성화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선정평가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계획에 따라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양식에 산정 근거를 기입하여 선정평가시 제출·발표하여야 합니다.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기술교류회’, ‘성과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 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00000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협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지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협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사업목적

- 국내 대학이 기업과 협력하여 AX특화 교육커리큘럼, 기업 협력형 교육환경을 갖춘 AX대학원을 운영하고 국가 AI전환을 주도할 도메인 전공 기반 AX인재양성 추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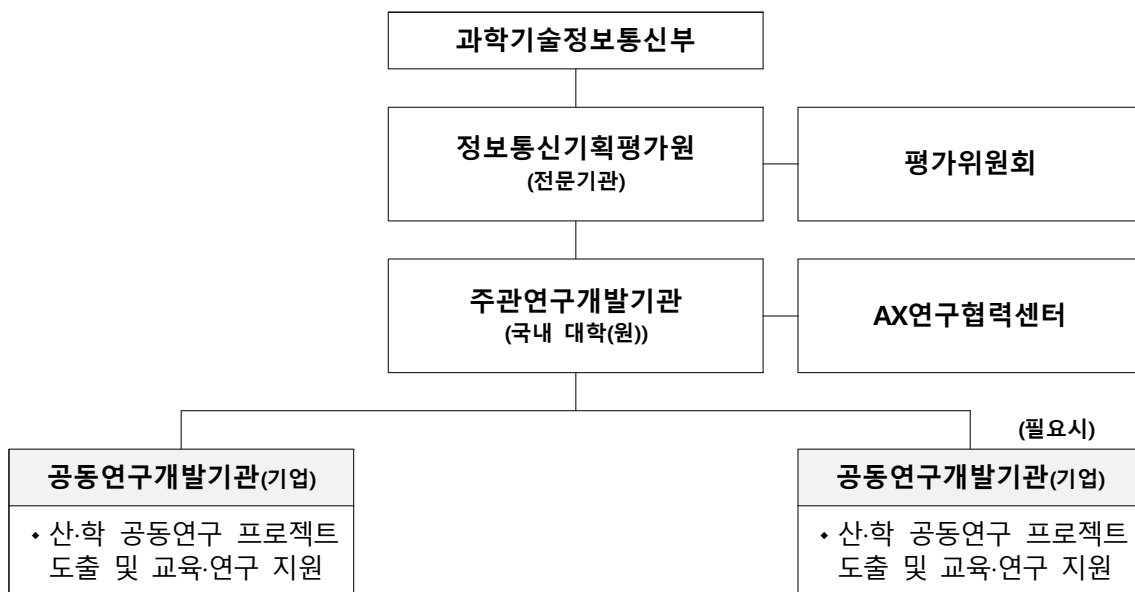
지원사항

- (지원대상) 대학(비수도권 소재), 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비수도권 소재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국내 기업(2개 이내)
- (예산규모) `26년, 총 25억원(총 5개 과제)
-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4년, + 2단계 : 2년)
 -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6.11월~12월(2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2~6차년도 30억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 (7% 내외)함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석박사 학위교육과정 운영 및 AX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학) 특화 도메인 및 AI 기초·융합 교육과정 개발, AX연구협력센터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 (학생)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인턴십·파견 지원 및 장학금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기업) 프로젝트 개발·운영,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인턴십 및 멘토링 등
 -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3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관별 구성 및 역할

기관	구성	사업 수행 시 역할
대학(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특화 도메인 및 AI적용·실습 전주기 교육과정(전공 기초·심화·응용·실습 등) 개발 및 운영 -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AX R&D를 수행하는 AX연구협력센터 설립(대학 내) 및 운영 -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최대 2개)이 참여	- 기업의 도메인 현안 또는 제품·서비스 기반 산학 협력 프로젝트 도출 및 추진 - 기업 소속 재직자 교육과정 개발·운영, 겸임교원 참여 -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의 기업파견 연구 등 지원 - 기업 현장 데이터, 연구인프라 제공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지원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75%		
	3천억 원 미만 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70%		
	3천억 원 이상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table><tr><td>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td><td>10% 이상</td></tr><tr><td>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td><td>13% 이상</td></tr></table>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13%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13% 이상						

-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1월 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 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1월 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대학) AX관련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이 가능한 국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대학(원)
 - * AX 융합분야는 신청대학 권역의 주요산업을 최소 1개(최대 2개) 자율 선택
 - *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지원 불가
 - * 교육부 AI거점대학 사업과 AX대학원은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신청 시, 즉시 과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대학선정 등 조치 가능)
 - * 정부지원 AI분야 고급인재(석·박사급)양성 지원을 받는 전공과정 또는 학과는 지원 불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원 지원 사업(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등)을 수행중인 대학은 별도 대학원 교육과정 설립 및 운영 필수
 - *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AX대학원) 수행중인 대학은 지원 불가
- (기업) 주관연구기관(대학)과 도메인 분야 AX인재양성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신청방식

-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고려하여, 5극 중 수도권권을 제외한 4개 권역(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서 각 1개 과제(총 4개 과제), 3특(강원·전북·제주)에서 1개 과제 선정
- * 4개 권역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 참여조건

- 기관의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도전적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3책5공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수도권 소재 대학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으로 구성(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특화 도메인 및 인공지능 기술 전문지식 교육이 반영된 커리큘럼 개발, 기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연구 등을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최대 2개로 제한)
- *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중 1개 이상은 중견기업 규모 이상 필수
- *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의 연구비 정산은 자체정산 진행 가능
- * 외국 소재 기업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 과제별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인력 중복 불가

◆ 특화 도메인 및 인공지능 융합·실습 교육과정 운영

- ‘27년 봄학기 AI융합(AX) 관련 석(박)사학위 과정 운영(필수)
-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 2차년도(27년)부터 매년 총 40명 이상 확보(필수)
- * 2개 분야로 신청 시 분야별로 연간 15명 이상 신입생을 선발
- * 1차년도는 AX 커리큘럼 개발, 「AX연구협력센터」 설립, 인프라 구성 등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중심의 대학원 운영 추진
- *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 참여 가능
- 도메인 중심의 AX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화 도메인 전문가, AI 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도메인 분야 및 AI 분야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필수
- * 전임교원 중 50% 이상은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
- * 2개 분야로 신청 시 전임교원은 분야별 3명 이상 확보
- * 현장 중심형 AX 교육·연구를 위해 분야별 산업계 겸임교원 확보
- * 단계평가지 해당학과 주소속 전임교원 수를 평가에 반영
- 도메인 역량(도메인 전공지식, 데이터 리터러시 등) + AI적용 모델 개발에 대한 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필수)

- * AI 기초·적용 교육 및 도메인 전주기(기초·심화·응용·실습) 커리큘럼 편성
- **AX전문인력 신속공급을 위한 석·박사 패스트트랙(5년 내외) 운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생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패스트트랙) 1단계(4년) 내 AX분야 패스트트랙 선발인원 대학당 5명 이상 운영
- **일부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수행 시 NPU 활용 권고**

◆ **AX연구협력센터 설립 및 AX 산학공동 프로젝트 추진**

- 도메인 분야의 AX전환에 대한 기업-대학간 협력연구 조직 기능 수행을 위해 **대학 내 「AX연구협력센터」 설치(필수)**
- * 실전형 AX연구 수행 전반을 위한 AX실습·실험 인프라 조성
- **산업계 수요 기반 AX 미해결·혁신도전 문제를 주제로 기업-대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기획(필수)**
- **현장의 AX문제 기반 프로젝트(PBL)를 구성하고, 학생이 직접 프로젝트 참여(필수)**
- * 프로젝트는 X+AI 복수 지도교수(대학 교원 1인+기업 겸임교수 1인) 체계 운영
- * 석사 졸업요건을 AX프로젝트(「AX연구협력센터」 응용·실습 교과목) 수행여부로 대체 가능
- **산업현장 중심의 성과도출 및 확산에 대한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 **인공지능 인재양성 성과 공유·확산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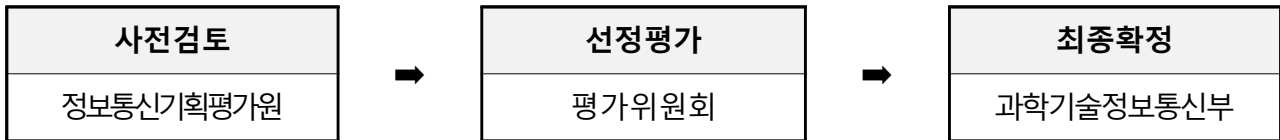
- AI·AX대학원 사업 수행대학 간의 우수 커리큘럼, 운영성과 공유, 협력안 발굴 등을 위한 「AI·AX대학원 협의회」 참여(필수)
- AX연구결과물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AX기술창업 활동 관련 교과목 편성**(기업가 정신 등) 및 **교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총 사업기간 내 학생창업 3건 이상(필수)**
- **글로벌 우수 산·학·연과 공동연구·기술협력 기반의 AX 연구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됨

□ 평가 절차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위원은 동일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 검토 후 공통 질의서를 발송하여 발표평가 전날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접수 받아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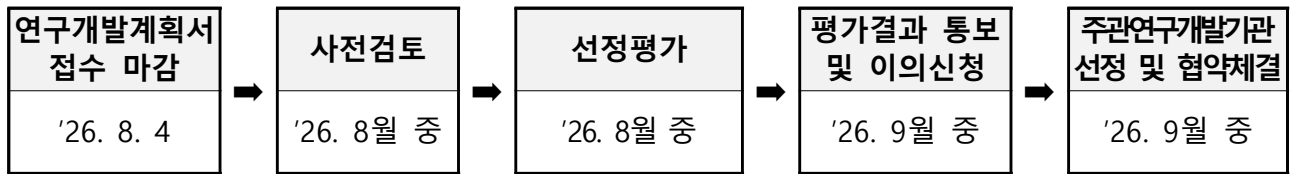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2차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발표 평가를 통해 평가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안)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AX인재양성 (40점)	· 산·학 인력양성 계획 및 방안의 우수성	10
	· 지역산업 연계 AX특화커리큘럼 등 교육과정 구성 계획의 우수성	10
	· "AX연구협력센터" 운영계획의 우수성	5
	· 지역산업 연계 AX산학공동 프로젝트 계획의 우수성	10
	· 지역산업 수요 기반 학생 창업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5
사업수행능력 (35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교원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
	· 주관, 공동연구기관 수행체계의 적절성	10
	· 주관, 공동연구기관 역할의 구체성	10
대학원 운영계획 (15점)	· 대학원 운영·지원 계획의 우수성 - 대학 차원의 지원, 성과 확산 및 공유협력 등	10
	· 교육·연구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5
기대효과(10점)	· 성과의 파급효과, 연구비 편성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10
합 계		100

□ 평가일정(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평가 외에도 현장방문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권역별 점수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 단,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선정평가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	---

※ 접수 마감일까지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예시 >

○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구분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일부 감면된 경우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전액 감면된 경우	비고
(실사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천만원	100천만원	
(최초)납부상한액	10천만원	10천만원	중소기업으로 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소), 20%(중견)
감면 규모	6천만원	11천만원	2년간 지급 인건비의 50%
발생기술료	5천만원	5천만원	
매출발생1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2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3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4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5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변경)납부상한액	4천만원	0원	(최초)납부상한액 - 감면 규모
최종납부기술료	4천만원	0원	납부기술료 전체 금액은 납부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납부기한	납부 유예기간 2년 후 매출발생 3년차 기술료와 함께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 소멸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 다만, 기업이 보유(제공)한 자원 기반의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 결과물은 기업이 우선 소유할 수 있으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7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근거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D사업 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준용

□ 공고기간

- 2026. 7. 3(금) ~ 2026. 8. 4(화) 15:00까지 (33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6. 7. 16(목) ~ 2026. 8. 4(화)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4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5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6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기업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필수)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만 해당)		
9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1, 2, 3, 5, 6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9번 제출서류 설명
 -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발표연구개발계획서는 전산등록기간 내 제출 불필요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해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신청 방법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공고
-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접수불가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필요시 추후 별도 공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IRIS 사용 매뉴얼)

9

사업설명회

□ 설명회 일정(안)

- (일시) 2026. 7. 10(금) 13:30 ~
- (장소) 대전 DCC컨벤션센터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인재팀 최윤호 책임(042-612-8434, cyh921118@iitp.kr)
AI·반도체인재팀 윤성준 책임(042-612-8433, lucete@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